국민이 주인인 연금
모두가 누리는 연금

2026 국민연금 100문 100답

NPS 국민연금공단
National Pension Service

2026 국민연금 100문 100답

목차

CONTENTS

Ⅰ 국민연금 제도

1. 국민연금제도는 무엇이고, 도입 배경에 대해 알려주세요. _ 08
2.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_ 09
3.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_ 10
4.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유리하다고 하던데 얼마나 유리한지 설명해 주세요. _ 11
5.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_ 12
6.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_ 13
7. 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_ 14
8.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_ 15
9.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_ 17
10.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_ 19
11. 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_ 21
1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_ 22
13.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_ 23
14.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_ 24
15.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_ 25
16.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_ 26
17.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부터 현재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_ 27
18. 국민연금의 적자 문제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나요? _ 28

Ⅱ 국민연금 기금

19. 기금운용본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규모와 운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_ 32
20. 국민연금기금 투자는 어떻게 하나요? _ 34
21. 국민연금기금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나요? _ 36
22.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리스크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_ 37
23. 대체투자가 무엇이고 국민연금은 대체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_ 38
24. 뉴스에 많이 나오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스튜어드십코드가 무엇인가요? _ 39
25.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공식적인 보고서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_ 40
26.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_ 41

Ⅲ 복지서비스

27. 재산관리지원서비스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_ 44
28.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_ 45
29.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장애심사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_ 46

Ⅳ 생애주기에 따라 궁금한 국민연금

가입연령 도달(18세)

30.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_ 50
31. 아르바이트하는데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_ 51
32.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_ 52

취업

33.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내역과 예상연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_ 53
34.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있나요? _ 54
35.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_ 55
36.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_ 56
37.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_ 57
38. 사업장가입자가 근무하던 중 월 중 퇴사해도 한 달 연금보험료를 내야하나요? _ 58
39. 9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납부가 너무 부담됩니다. _ 59
40. 국민연금 추납(추후 납부)이 뭔가요? _ 60
41.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_ 61
4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나요? _ 62
43.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_ 63
44. 연말정산(종합소득 신고) 할 때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_ 64
45.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_ 65
46. 가입내역안내서를 받았는데 뭔가요? _ 66
47.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하나요? _ 67

사용자

48.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_ 68
49.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_ 69
50.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_ 70
51.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_ 71
52. 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EDI 서비스에 대해 알려주세요. _ 72

목차

CONTENTS

Ⅳ 생애주기에 따라 궁금한 국민연금

퇴직 이후

53.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_ 73
54. 실업크레딧이 무슨 제도인가요? _ 74
55.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_ 75
56.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_ 76
57.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_ 77
58.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_ 78
59. 소득이 줄어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_ 79
60. 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_ 80
61.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면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_ 81
62. 국민연금 미납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_ 83
63.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_ 84
64. 국민연금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나요? _ 85
65. 해외에 체류 중이면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_ 86

결혼 및 출산, 이혼 등

66.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_ 87
67.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_ 88
68. 출산크레딧이 무슨 제도인가요? _ 89
69.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_ 90
70. 군복무크레딧이 무슨 제도인가요? _ 91
71. 이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_ 92

사고·질병에 따른 장애 발생

72. 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_ 93
73.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_ 94
74. 만성신부전증(진행만성콩팥병)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_ 95
75.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_ 96
76.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_ 97
77. 장애·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_ 98

Ⅳ 생애주기에 따라 궁금한 국민연금

사고·질병에 따른 사망

78. 사망하게 되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_ 99
79. 배우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_ 100
80.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_ 101
81.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얼마 전 재혼하셨는데 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_ 102
82.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_ 103

일시금

83.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나요? _ 104
84.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_ 105
85.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_ 106
86.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_ 107

노령연금 신청

87. 국민연금 청구 절차가 따로 있나요? _ 108
88. 국민연금을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나요? _ 109
89.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_ 110
90.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급하는 것과 연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_ 111
91.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_ 112
92.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국민연금도 오르나요? _ 113
93.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_ 114

노령연금 수급

94.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_ 115
95.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나요? _ 116
96. 국민연금,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_ 117
97. 연금을 받는 계좌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_ 118
98.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국민연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_ 119
99. 연금 수급 중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어떤 경우에 신고하나요? _ 120
100.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_ 121
101. 해외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_ 122

2026 국민연금 100문 100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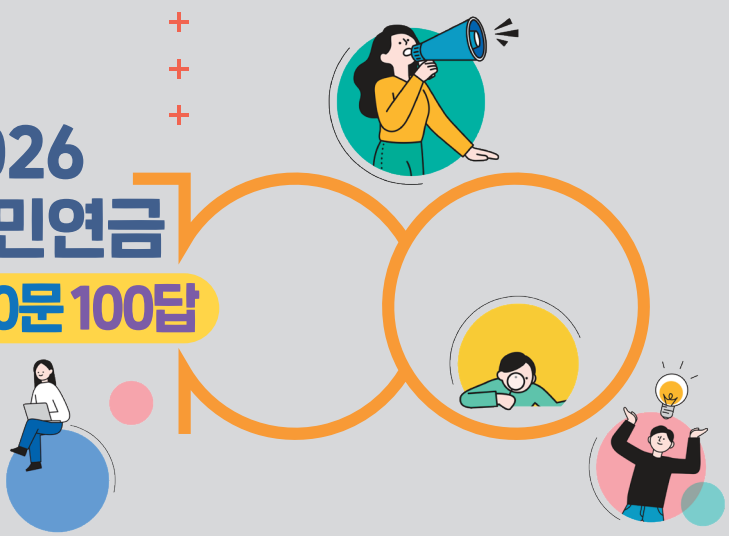

국민이 주인인 연금
모두가 누리는 연금

Ⅰ 국민연금 제도

01

국민연금제도는 무엇이고, 도입 배경에 대해 알려주세요.

-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로, 1960년대 이후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 증가와 개인이 대처하기 힘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1988년 도입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후의 소득 상실 보전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 보전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이 대응하기 힘든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경제성장과 근로 인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적고, 핵가족화 등으로 노후 소득보장이 가족에서 개인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노인이 빈곤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도입을 논의하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02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의무), 지역가입자(의무), 임의가입자(선택), 임의계속가입자(선택)로 구분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사업장가입자 (의무)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와 근로자 (외국인 포함) ※ 단, 18세 미만 근로자도 가입 대상이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제외 가능
지역가입자 (의무)	• 1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다만, ①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③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④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제외
임의가입자 (선택)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납부 이력이 없는 27세 미만인 학생 등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임의계속가입자 (선택)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가 넘었지만, ①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②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본인이 희망하여 계속 가입한 자(65세 생일 전까지 가입 신청 가능)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은 권리, 사용자의 가입은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03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국민연금은 늘어난 평균수명과 길어진 노년의 삶,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를 맞는 법정 정년은 60세로 최소 20년 이상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노후 소득 공백을 채워주는 필수적인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로 가족구조·부양의식이 변화되어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지만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필수 노후 준비제도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약 2,184만 명이 가입 중으로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table>
<tr><th></th><th>자영업자</th><th>근로소득자</th><th>공무원 등</th></tr>
<tr><td>3-2층</td><td rowspan="2"></td><td colspan="2">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td></tr>
<tr><td>3-1층</td><td>퇴직연금(퇴직금)</td><td rowspan="3">[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td></tr>
<tr><td>2층</td><td colspan="2">국민연금</td></tr>
<tr><td>1층</td><td colspan="2">기초연금</td></tr>
<tr><td>0층</td><td colspan="3">기초생활보장제도</td></tr>
</table>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유리하다고 하던데 얼마나 유리한지 설명해 주세요.

04

- 국민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뛰어나며, 실질 가치가 보장되고 평생 지급되므로 가장 기본적인 노후준비 수단임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 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연금이 지급되며, 소득재평가, 물가변동률 반영 등의 장점이 있어 길어진 노후 대비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연금액 산정 시 과거 가입기간 중 적용된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소득재평가)해 줌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도 함께 늘어나 경기변동 상황에서도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위한 필수 자산이자 최고의 노후준비 수단입니다.

〈 처음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

과거 소득금액
1988년 **100만원**이던 나의 소득은?

2025년 재평가를 적용한 소득
824만원

〈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

전년도 **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연금액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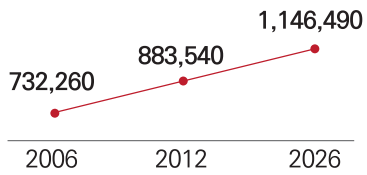

*2006년 최초 수령 후, 2026년까지 414,230원 인상

05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1961~1964년생)부터 연금 수령
-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 달라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면 지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A값(2026년 기준 3,193,511원) 이하라면 지급개시연령 보다 최대 5년 먼저 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개시 연령이 다르며,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 중 평균소득월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표

출생 연도	지급연령(「국민연금법」 제8541호 부칙 제8조)	
	노령연금, 분할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년 ~ 1956년	61세	56세~60세
1957년 ~ 1960년	62세	57세~61세
1961년 ~ 1964년	63세	58세~62세
1965년 ~ 1968년	64세	59세~63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64세

개인별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필요)

참고로, 2025년 12월 기준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분들의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113만 원 정도입니다.

06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월 납부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의 9.5%
-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지역가입자는 농업, 임업, 어업, 근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 사업장 사용자는 농업, 임업, 어업, 사업소득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단에 개인의 소득을 신고하여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9.5%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자 기여금 4.75%에 사용자 부담금 4.75%를 더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5% 전부를 납부합니다.

아울러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지역가입자는 농업·임업·어업·근로·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는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월평균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득 변경을 신청하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07

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연금액은 기본연금액 × 연금 종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

연금액 산정(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1.29(A^{1)}+B^{2)})(1+0.05n^{3)})/12)$

1.29 : 2026년 소득대체율 비례상수

1) (균등부분, A값)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

2) (소득비례부분, B값)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3) (가입월수, n)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월수

※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됩니다.

• **지급률**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50%, 1개월마다 5/12% 증가하여 20년 100%

장애연금 : 장애 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유족연금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 **부양가족연금액** (※ 2026년 기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대한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되는 기간의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등급 4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인 경우 지급되지 않음

* 부모의 연령은 급여지급 연령 상향조정 규정에 따름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액이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 감액(2025.1.1. 소득부터 적용)

08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지급개시연령에 도달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 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 생일의 다음 달부터 평생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청구 시기, 이혼여부 등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구분	요건
노령연금	•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 •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 일부 감액*
조기노령연금	•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최대 5년 먼저 지급 • 청구 연령에 따라 70% ~ 99.5%를 지급
분할연금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하고 그 배우자가 지급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액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

* 2025.12월 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액이 A값 초과 시 감액에서 「A값+200만 원」이상인 경우 감액으로 변경(2025.1.1. 소득부터 적용, 2026.6.17. 시행)

(장애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장애등급 1~3급은 연금, 장애등급 4급은 일시금)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 범위의 유족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	연령, 장애요건
배우자(사실혼 포함)	연령, 장애요건 없음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

* 개정법 시행일(2023.9.14.) 이후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 부모 또는 조부모의 연령은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에 따름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 60세 도달(가입기간 10년 미만),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 재가입 불가)
※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에 따르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부터 청구 가능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09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국민연금 연금액은 보험료를 '오래', '많이' 납부할수록 커지며,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수령 시기를 늦춰서 수령액을 늘릴 수 있음

연금액은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보험료를 최대한 '오래', '많이' 납부할수록 커집니다.

다만, 소득은 임의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서 가입기간을 최대로 늘려야 합니다.

②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임의(임의계속)가입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소득배우자는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하여 가입 후 10년 이상 납부하면 부부가 모두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기여를 한 경우 보험료 납부 없이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출산 · 군복무)가 있습니다..

④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⑤ 과거에 찾아갔던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납하거나, 실직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등을 추가로 납부(추납)하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

⑥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최대 5년간 연기하여, 연금액을 최대 36%(월 0.6%) 더 받는 연기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임의가입	▶ 전업주부, 27세 미만 학생 등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
임의계속가입	▶ 60세가 되어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
크레딧제도	▶ '08년 이후 출산(둘째 자녀 이상)이나 병역의무 이행(6개월 이상 복무)시, 보험료 납부 없이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2025년 연금개혁으로 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범위 확대 - 출산: 2026.1.1. 이후 출산·입양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가입기간 추가 및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 규정은 폐지 - 군복무: 2026.1.1. 이후 군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 추가 인정
보험료 지원	▶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농어업인, 저임금근로자, 실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50~80%)
반납제도	▶ 찾아갔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하여 가입기간 복원
추납제도	▶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의 무소득배우자 등으로 적용 제외된 기간, 1988년 이후 군복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추후에 납부
연기연금	▶ 노령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급을 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 최대 5년간 연기 가능하며, 연기 신청한 기간 당 일정 비율(월 0.6%, 연 7.2%)을 가산하여 지급

10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 지원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시행	2012.7월~	2022.6월 ~	1995.7월 ~	2022.7월 ~ (2026.1월 개정 시행*)	2027.1월 ~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가사근로자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국민연금법」부칙 제8541호 제7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소득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가사근로자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월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 (단, 실업크레딧 또는 농어업인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시행 이후 18세부터 지원 (2027년 기준 2009년생부터 순차적 적용)
지원 수준	보험료의 80% (월 최대 174,800원)	보험료의 80%	보험료의 50% (월 최대 50,350원)	보험료의 50%	지원신청일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
재산·소득 요건	(재산)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재산) 12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6,00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사업·근로소득제외)	없음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최대 36개월	제한 없음	최대 12개월	최대 1개월 (18세부터 26세까지 신청)

* 2026년부터 일정 소득 미만의 저소득지역가입자로 대상 확대(납부재개 요건 삭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월 87,4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월 87,400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입니다.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사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월평균소득 270만 원 미만의 가사근로자에게 가사근로자 기여금의 80%, 사용자 부담금의 80%를 지원합니다.
*가사근로자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국민연금법」 상 농어업인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실제 경작 면적의 합이 총 1,000㎡ 이상인지 확인, 농업시설의 경우 총 330㎡ 이상인지 확인)·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월 보험료가 100,700원을 초과하면 월 50,350원을 월 보험료가 100,700원 이하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월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소득이 적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서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2027.1.1. 제도 시행 이후 18세 도래(2009년생부터)하는 청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며,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드립니다. 지원 금액은 지원신청일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연도별 지원 금액 변동될 수 있음)입니다.

11 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 (출산크레딧) 자녀를 출산(입양) 하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 (군복무크레딧)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초 제도 도입 당시에는 최대 50개월을 한도로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하였으나, 2025년 연금개혁으로 첫째 자녀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여 2026.1.1. 이후 출산·입양한 경우 첫째·둘째 자녀에 대해 각각 12개월씩,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최대 50개월까지만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되었습니다.

* 2026. 1. 1. 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군 복무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초 제도 도입 당시에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하였으나,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1.1. 이후부터는 6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경우 실제 군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하되,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6.1.1. 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실업크레딧)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연금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

다만,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합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26년 1월 현재)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 원 초과자

[소득]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초과자

1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 가입 연금
- 개인연금은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 가입 연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을 받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 실시하는 것이며, 개인연금은 선택 가입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물가 상승에도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되며, 사망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사망 시 지정인 또는 법정 상속인에게 약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셋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한 국가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원한다고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외 이주나 가입자가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만 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납부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3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 가입대상, 납부하는 보험료 및 받는 연금액이 다름
-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재해 보상급여도 포함

도입 시기, 가입대상, 보험료율, 보장하는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국민연금(1988년) 순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1995년 농어촌 지역 및 농어민 확대 적용을 거쳐 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공적연금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은 특정 직역 종사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5%, 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연금의 보험료율은 18%,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은 14%입니다.

(2026년 기준)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군인연금
보험료율	9.5%	18%	18%	18%	14%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2025년)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됩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는 퇴직금, 재해 보상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근로자는 퇴직금을 별도로 받지만,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에 퇴직금(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 해외 진출기업 및 파견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결
-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 수급권 확보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협정체결 국가별 우리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째, 해외 진출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해소입니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각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가별 최소 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미국의 예를 들면, 협정 체결 전에는 미국 사회보장세를 9년 동안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4년 동안 납부한 경우, 양국 모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각 납부기간에 대해 양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한 번만 인정됩니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 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또한 협정 체결국 간에는 상대국에 거주하는 이유로 연금 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제한 없이 지급합니다.

● 사회보장협정 시행국

(2026년 2월 기준 총 42개국)

효 과	국 가 명
보험료 면제 (10개국)	이란(1978.6), 영국(2000.8), 네덜란드(2003.10), 일본(2005.4), 이탈리아(2005.4), 우즈베키스탄(2006.5), 몽골(2007.3), 중국(2013.1), 스위스(2015.6), 칠레(2017.2)
가입기간 합산 (1개국)	뉴질랜드(2022.3.)
보험료 면제 + 가입기간 합산 (31개국)	캐나다(1999.5), 미국(2001.4), 독일(2003.1), 헝가리(2007.3), 프랑스(2007.6), 호주(2008.10), 체코(2008.11), 아일랜드(2009.1), 벨기에(2009.7), 폴란드(2010.3), 불가리아(2010.3), 슬로바키아(2010.3), 루마니아(2010.7), 오스트리아(2010.10), 덴마크(2011.9), 인도(2011.11), 스페인(2013.4), 튀르키예(2015.6), 스웨덴(2015.6), 브라질(2015.11), 핀란드(2017.2), 퀘벡(2017.9), 페루(2019.1), 룩셈부르크(2019.9), 슬로베니아(2019.10), 크로아티아(2019.11), 우루과이(2021.11), 베트남(2024.1, 합산 유예), 필리핀(2024.4), 노르웨이(2024.6), 아르헨티나(2025.2)

15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예상연금액, 미납내역, 연금 청구, 반·추납 신청, 증명발급 등 119종 서비스
- 공공기관 최초! 주민등록등·초본 등 타 기관들의 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의 예상연금액,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고 지역 · 임의(계속)가입자 취득 등 각종 신고·신청과 다양한 증명서 발급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증명발급' 메뉴에서는 국민연금 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등의 전자증명서 (전자문서지갑) 발급·열람·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로그인은 인증서 및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이 선택 인증합니다.

모바일 앱 제공 주요 서비스

(2025.12월 말 기준)

대상	구분	서비스
개인 (91종)	조회 (32종)	예상노령연금, 연기연금신청자 예상연금월액 조회, 연금 수령액 인상 안내, 가입내역, 월별연금지급내역 (세금공제내역), 과오납금, 연금소득원천징수, 연금보험료 미납내역, 연금보험료 지원내역, 일시금 지급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 대여금 상환내역, 장애/유족연금 예상조회, 장애/유족연금 장애심사 진행상태 조회, 보험료 선납내역 조회,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조회, 보험료 결정내역(개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통합처리 결과조회,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 연금청구 처리내역 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반납금 납부현황, 반납금 미납내역, 추납보험료 납부현황, 추납보험료 미납내역, 환수금 납부내역, 실업크레딧 납부내역, 실업크레딧 미납내역,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수급권 내용변경 통지내역
	신고·신청 (24종)	연금/일시금 청구,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 수급권 변동확인 신고(서류제출),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지역가입자 취득신고,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임의가입자 가입·탈퇴, 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반납금 납부 신청,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실업크레딧 신청, 연금(일시금) 상담예약신청, 기초연금 상담예약 신청, 안내문 수령방법 신청, 해외송금 신청, 심사청구, 수급권 포기/회복 신청, 노령연금 연기/재지급 신청, 소득있는 업무종사/중단 신고, 수급권 소멸 신고, 마이데이터(두루누리),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증명발급 (16종)	가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수급증명서, 일시금 지급내역서, 개인회생신청용 확인서, 퇴직금전환금 부과내역서,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수급증명서 재발급,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가입자증명서 발급(구 가입자 증서재발급), 증명서 진위확인, (전자증명서) 타 기관 발급 신청, (전자증명서) 발급목록 및 제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연결
	노후준비 (6종)	내연금 알아보기, 노후자금 간편진단, 노후준비 종합 진단, 교육신청/내역 확인,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신청하기
	신고센터 (13종)	자격확인청구, 실태조사, 가입자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연금보험료 지원금 누락 신고, 연금보험료 지원금 미지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 사업장 가입정보 조회, 부패행위 등 신고, 안심변호사 신고, 외부기관으로 신고, 예산낭비 신고, 안전 신고, 공공데이터 품질 신고
공통(28종)		(고객센터) 칭찬해요, 속상해요, 채팅상담, 공지사항, 상담신청, 국민제안, 국민연금 고객센터, 모바일 개선요청, 자주 찾는 질문(FAQ), IT신기술 제안, 안전제안, 규제개선 제안, 기업성장응답센터 (공단소식) 새소식, 보도자료, 뉴스레터, 웹진, 국민연금 포스트, 연구원 발간자료, 기금운용 현황, 수익률(수익금)현황, 서식자료, 지사찾기 (공통) 마이페이지, 팩스보내기, 인증센터, 설정 등

※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6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4대 분야에 대해 진단, 상담, 교육 등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 제공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90년 5.1%에서 2050년에는 40.1% 수준까지 이를 전망입니다. 고령사회는 수명연장 측면에서 축복일 수 있으나,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후준비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필요 시 가까운 공단 지사(노후준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거나,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sa.nps.or.kr)에서 종합재무설계, 내 연금 알아보기(9종의 공·사 연금 통합조회)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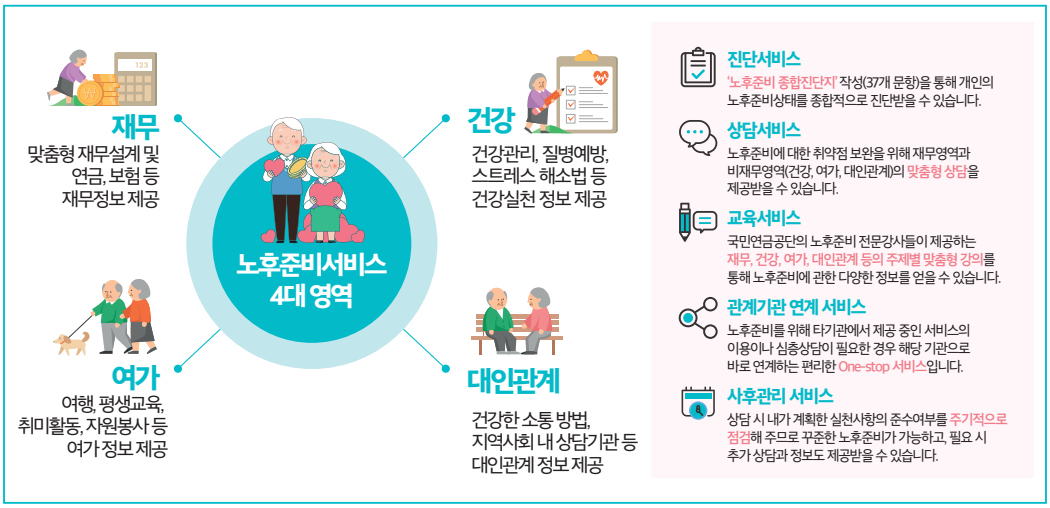

17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부터 현재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후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1999년에는 도시지역으로 확대되어 '전 국민연금 시대'가 열렸으며, 2006년에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으로 제도가 확대되었으며,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까지 적용되어 비로소 '전 국민연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한 2003년 7월 1일 이후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전문 직종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6년 1월에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임시 · 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자격을 보다 완화하여 명실상부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988년 3%, 1993년 6%에서 1998년 9%로 조정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3%에서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p씩 상향조정, 2005년 7월부터 9%로 적용되다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세 차례의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조정되었고, 지급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통해서는 소득대체율이 60%에서 2008년 50%, 그 이후 매년 0.5%p씩 감소하여 2028년부터는 40%로 낮아지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 3차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2025년)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됩니다. 또한, 소득대체율은 2025년 41.5%에서 2026년부터 43%(1.5%p)로 일시에 인상됩니다.

18

국민연금의 적자 문제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나요?

- 납부보험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지급으로 재정적자 발생
-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라 가입자는 급감하고 수급자는 증가

국민연금은 초기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높여가도록 설계되었고, 이에 납부보험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가 지급되면서 재정적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면서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 결과, 5차 재정계산에서 기금 소진 시점이 4차 재정계산(2057년) 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으로 전망되었고,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와 거시경제변수를 반영해 이루어진 재정추계에서 기금소진 연도가 2056년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전망(5차 재정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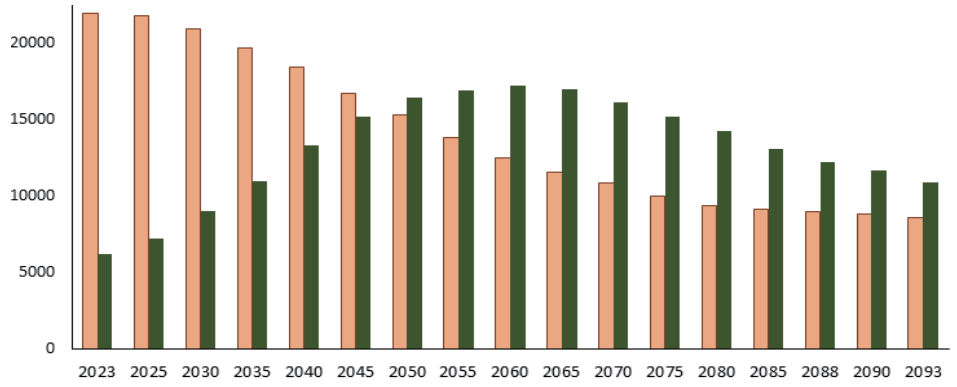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보험료율(9%→13%) 및 소득대체율(41.5%→43%) 조정이 이루어지면, 기금소진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되고,

여기에 기금투자수익률을 1%p(4.5%→5.5%) 높일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71년까지 1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6
국민연금
100문 100답

2026 국민연금 100문 100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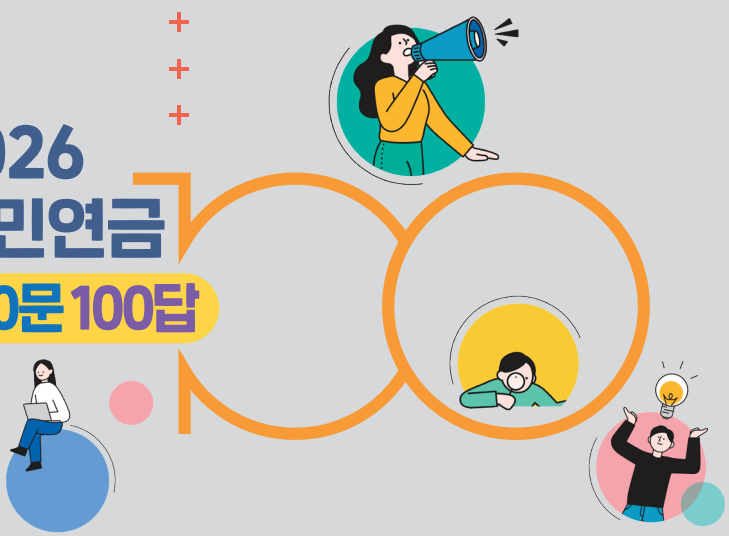

국민이 주인인 연금
모두가 누리는 연금

Ⅱ 기금운용

19

기금운용본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규모와 운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2025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1,892.4조 원 중 연금 급여 등으로 434.4조 원을 지출하여 1,458.0조 원이 적립되어 있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변화하는 금융·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연금기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내 설치된 기금운용 전담 조직입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급속한 증가와 투자환경 등 기금운용 여건의 변화에 따라 1999년 공단은 기금운용본부를 설립하여 기금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03년 100조 원, 2015년 500조 원, 2020년 800조 원에 이어 2023년 1,000조 원을 돌파하여, 2025년 말 기준으로 1,458.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운용 지침에 따라 금융 부문과 복지 부문,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금융 부문 포트폴리오는 국내채권 20.9%(304.8조 원), 해외채권 6.9%(101.3조 원), 국내주식 18.1%(263.7조 원), 해외주식 37.8%(550.5조 원), 대체투자 16.0% (232.6조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운용수익금은 969.3조 원(잠정), 기금적립금 1,458.0조 원으로 기금 1천 400조 원 시대를 넘어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2025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주요 현황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구성

조성 1,892.4조 원	지출 434.4조 원	기금적립금 1,458.0조 원
923.0 (연금보험료 등)	421.0 (연금급여)	1,457.5 (금융부문)
969.3 (운용수익금)	13.4 (관리운영비 등)	0.5 (복지·기타)

* 각 수치는 반올림돼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연도별 기금수익률(금액가중/시간가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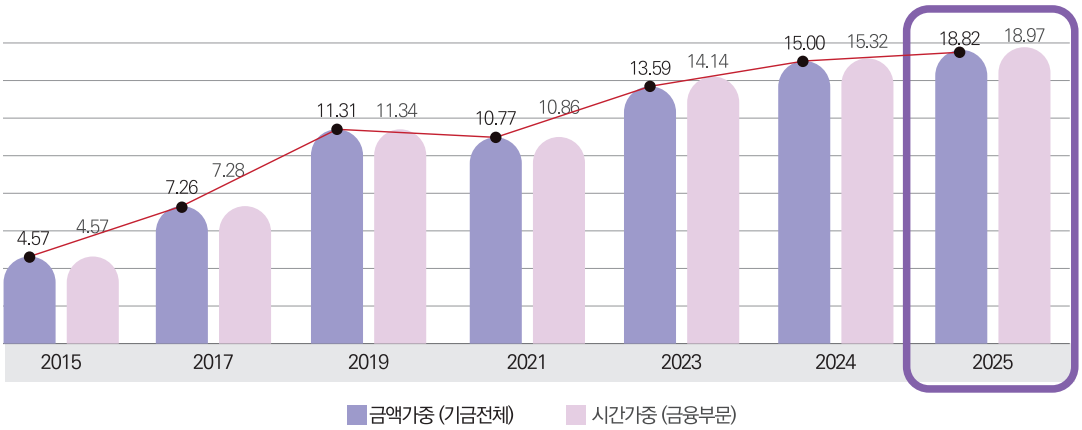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액가중(기금전체)	4.57	4.75	7.26	-0.92	11.31	9.70	10.77	-8.22	13.59	15.00	18.82
시간가중(금융부문)	4.57	4.69	7.28	-0.89	11.34	9.58	10.86	-8.28	14.14	15.32	18.97

* 2025년 수치는 잠정치 임

수익률 산정 용어해설

금액가중수익률	• 국민의 입장으로, 운용을 통해 획득한 총손익을 금액의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계산한 수익률 • 수익금을 평균적인 투자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익률
시간가중수익률	• 운용자의 능력을 시장(벤치마크)과 비교·평가하기 위한 수익률 • 일별로 단위 수익률을 산출한 후 이를 연간으로 누적함으로써 자산 규모 변동 및 자금 유출입의 영향을 배제한 수익률

20 국민연금기금 투자는 어떻게 하나요?

-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기금 투자정책 및 자산배분 비중 등 주요 사항이 결정되면, 이를 공단(기금운용본부)이 집행 • 실행
- 허용된 위험범위 내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자산군별 목표 비중에 따라 주식, 채권 외 대체투자 자산(부동산, 인프라, 사모 등)에도 투자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 실행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과 기금운용본부의 전문가가 기금 투자정책과 자산 배분(안) 수립 등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제·금융시장·제도적 특성을 고려해 의결·결정합니다.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와 3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전담 조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에 따라 투자 실행합니다.

기금운용 프로세스

(기금운용 프로세스) 기금운용위원회가 계획을 수립(① Plan)하면,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를 실행(② Do)하고, 이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가 점검(③ Check & Act)

자산군별 투자 목표 비중을 결정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운용계획(중기계획)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연 단위 계획 수립

(중기계획) 목표수익률은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내부수익률을 원칙으로 하며,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정추계에서 적용한 예상수익률, 기금의 자산·부채에 대한 장기 전망 또는 재정안정 시나리오 등에 기반한 재정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

(연 단위 계획)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주어진 위험 한도 내에서 최적 자산배분안 도출 및 대안 검토 후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

2026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아래와 같이 각각 결정하여 기금을 운용 중입니다.

2026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

(단위: %)

주식		채권		대체투자
국내	해외	국내	해외	
20.8	34.7	23.1	7.4	14.0

또한, 투자 다변화를 통한 안정성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 배분 구성을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 및 대체투자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 중입니다.

투자 비중 변화 추이

(단위: 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채권투자	44.5	42.6	42.1	38.6	35.7	27.9
주식투자	44.3	44.5	41.1	45.2	47.1	55.8
해외투자	36.5	43.8	47.9	51.6	57.9	59.1
대체투자	10.9	12.6	16.4	15.9	17.1	16.0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우수한 운용인력을 확보하고 투자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21

국민연금기금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나요?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하여 내·외부 감사 및 내부통제가 제도화 되어 있음 아울러,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주요 투자현황 및 수익률, 거래기관 등에 대하여 공단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이 대상인 만큼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감사 및 내부통제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부적으로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어 기금운용의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정기적인 감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자금운용계획에 맞추어 운용되고 있는지, 업무상 위법 사항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기관감사를 통해 기금운용 및 경영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지침에 명시한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성실하게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수익성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특히 미래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안정성 국민연금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공공성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적립 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유동성 국민연금기금은 연금 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국내 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지속가능성 국민연금기금은 투자자산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운용 독립성 국민연금기금은 상기 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22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리스크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기금재정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해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리스크 관련 정책을 결정하면 공단은 자산별 위험관리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험관리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위험으로 인식하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시장위험	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되는 위험
신용위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 금액의 회수가 어렵거나, 투자자산의 가치 하락하게 되는 위험
유동성위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지 못함에 따른 손실 가능성
법규위험	법 해석 또는 계약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기금이 보게 될 손실 가능성
운영위험	적절치 않은 내부통제, 업무처리 절차, 오류, 실수 등으로 기금이 손실 보거나 명성이 훼손되는 위험

23

대체투자가 무엇이고 국민연금은 대체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투자상품과 다른 위험-수익 특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자산군임
-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확대를 통해 투자 다변화를 실현

대체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쓰는 개념으로,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모든 투자상품이 대체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국내 벤처투자로 대체투자를 시작한 이후 국내외 부동산, 인프라, 사모투자, 해외 헤지펀드 등 투자 대상 및 규모를 점차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는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대체투자 투자범위는 국민연금기금 관련 투자정책서인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부동산, 인프라, 벤처투자, 기업구조조정조합투자, 사모투자, 헤지펀드, 자원개발, 전술적 운용 활성화 프로그램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운용 규모는 2025년 12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의 16.0%인 232.6조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동산에 65.9조 원, 인프라에 61.4조 원, 사모투자*에 105.3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지펀드, 사모대출, 멀티에셋 포함)

한편,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부문 투자 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내 '대체투자위원회'라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고, 투자 대상을 특정하여 그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대체투자 자산의 투자 결정 및 변경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대체투자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심의 대상 사업 소관 실장을 제외한 내부 위원 3인과 외부 전문가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됩니다.

2025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대체투자 자산으로는 영국의 플럼트리 코트, 독일의 마인제로, 호주의 이스트링크, 싱가포르의 프레이져스 타워, 미국의 원 밴더빌트, 캐나다의 CIBC 스퀘어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헤지펀드와 같이 새로운 대체투자 자산군에 대해 탐색하고, 글로벌 운용사·연기금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우량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등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 뉴스에 많이 나오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스튜어드십코드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맡은 수탁자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의결권 행사, 기업과의 대화 등 책임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책임투자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함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 Environmental), 사회(S, Social), 지배구조(G, Governance)(이하 'ESG') 등을 고려하는 투자로서, 장기적인 수익을 높이고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06년 국내 주식 책임투자형 위탁 펀드 운용을 시작으로, 2009년 책임투자에 관한 글로벌 기관투자자 협의체인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 가입하는 등 책임투자 활동 도입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 대상과 관련하여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8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등을 통하여 수탁자책임 활동에 대한 체제를 정립하였습니다. 2019년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을 통해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민연금기금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ESG 통합전략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이 마련되어 동 전략에 따라 기금이 투자중인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란 국민연금이 충직한 집사(steward)로서 자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및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수탁자책임 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각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하여 중장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점검합니다.

25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공식적인 보고서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 기금운용 관련 주요 정보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운용 현황, 책임투자 관련 현황, 의결권 행사내역 등 주요 공시항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https://fund.nps.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 및 운용성과를 비롯하여 주요 정책 등 기금운용 정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금운용보고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관련 주요 공시 대상

구분	공시 대상	공시 주기
운용현황	기금조성·지출·적립 현황	월별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연간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현황	월별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세부내역(지역·섹터, 투자종목 등)	연간
	국내주식 대량보유내역	분기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내역 및 세부 반대 사유	수시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현황	분기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투자현황(운용규모, 종목 등)	연간
운용성과	전체·자산군별 운용수익률 및 수익금	월별
운용정책	기금운용지침	수시
	기금운용계획	수시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수시
	기금운용규정	수시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선정기준	수시
기금운용위원회 활동내역	기금운용 관련 주요 정책 결정 사항	수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수시
	기금운용 성과평가 결과	연간

26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른 정량평가와 전문위원회의 정성평가로 기금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고 있음
- 내·외부 평가를 병행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됨

기금의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3년 이상의 장기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성과평가는 벤치마크 및 목표요구수익률과의 정량적 비교 평가뿐만 아니라 운용체계와 위험관리의 개선 등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합니다.

정량평가는 기금전체의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 평가(상대성과) 및 목표요구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 평가(절대성과)로 구성되며, 이 경우 기금 전체의 목표수준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정한 목표초과수익률(상대성과) 및 목표요구수익률(절대성과)로 합니다.

정성평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기금운용본부가 목표 수립 시 제출한 업무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과제에 대한 기금운용본부의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전문위원회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국민연금연구원과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연구원과 외부전문평가기관의 성과평가를 자문·검토한 후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심의와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2026 국민연금 100문 100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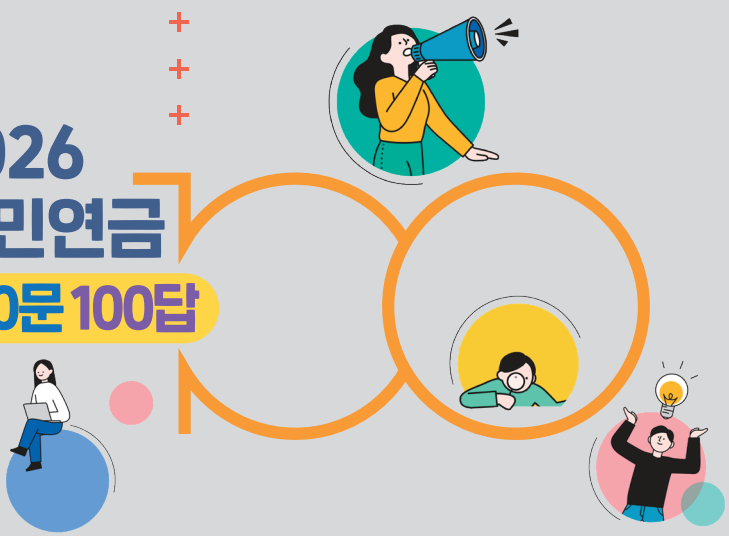

국민이 주인인 연금
모두가 누리는 연금

Ⅲ 복지서비스

27

재산관리지원서비스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재산관리지원서비스란 장애·치매 등으로 재산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들의 재산을 사기, 갈취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지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제도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이며, 그들은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기 어려워 사기, 갈취 등의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발달장애인 또한 재산관리의 어려움에 직면한 점은 치매노인과 동일합니다. 이들이 장애·치매로 인해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의료·주거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치매나 발달장애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공공기관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이 안정적으로 쓰이도록 돕고, 재산이 사기나 갈취 등 부당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19세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이메일, 팩스, 우편 중 선택)해야 합니다.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이며, 위탁금액의 상한은 없습니다.

· 이메일 : propertycare@nps.or.kr
· 팩스 : 063-900-3338
· 우편 : (5487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재산관리지원추진단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26년 4월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으로 인해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65세 미만의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도 포함됩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이용료가 없습니다. 현금, 주택연금 등 현금성자산을 10억 원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안심콜센터(1899-9988)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8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의료·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급속한 초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 의료·돌봄 수요가 증가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지역기반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구조는 공급기관과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제공의 양과 질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연령과 장애특성에 따른 복합 욕구(의료, 돌봄, 자립)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단위: %)

구분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장애인 건강관리	기타
서비스 수요	43.9	26.9	7.9	6.5	4.2	10.6

따라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이 시설(병원)에서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돌봄·주거 등의 서비스를 한 사람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지역사회 기반 돌봄의 확대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65세 미만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 등이며, 65세 이상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노인 통합돌봄 사업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사회보장위원회 신설·변경 협의제도' 절차에 따라 시행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9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장애심사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심사 수행. 13개 장애유형에 대해 1~4급 결정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정도심사 수행, 15개 장애유형에 대해 심한/심하지않은 장애 결정 (2026.7.1. 췌장장애 신설하여 16개 장애유형)

국민연금 장애심사	눈, 귀, 입, 지체, 정신 또는 신경계통, 호흡기, 심장, 신장, 간, 혈액 조혈기, 복부 골반장기, 안면, 악성 신생물
장애 등록심사	시각, 청각, 언어, 지체, 뇌병변, 정신, 뇌전증, 호흡기, 심장, 신장, 간, 장루요루, 안면, 지적, 자폐성, 췌장장애*

* 2025.12월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췌장장애가 신설(2026.7.1. 시행)

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심사와 2007년도부터 정부로부터 수탁을 받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심사는 장애인의 상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애여부와 정도를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장애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별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석하는 의학자문회의를 통해 장애정도를 판정하며, 의학자문회의 과정에서 정확한 장애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을 요청합니다.

공단은 기존 15개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정도 심사를 수행해왔으나, 췌장장애는 지속적인 치료과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과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련학회와 협력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는 중증췌도부전을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췌장장애를 신설, 2026.7.1.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췌장장애 신설을 통해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환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국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단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판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6
국민연금
100문100답

2026 국민연금 100문 100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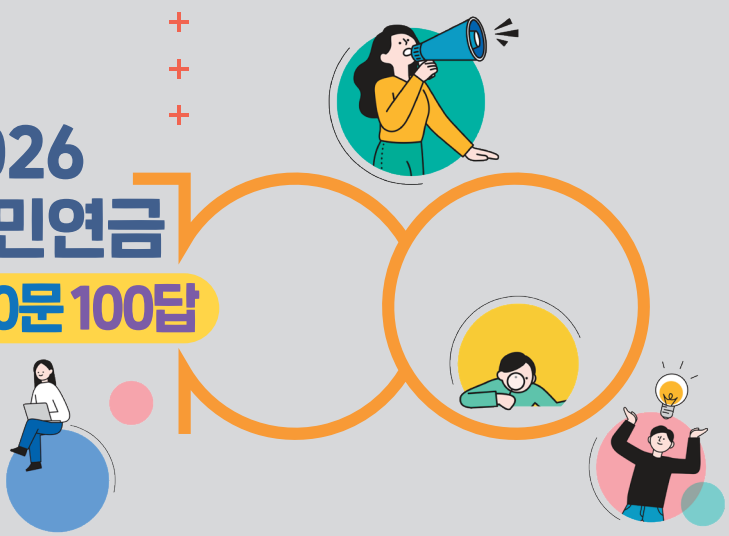

국민이 주인인 연금
모두가 누리는 연금

Ⅳ 생애주기에 따라 궁금한 국민연금

- 가입연령 도달(18세)
- 취업
- 사용자
- 퇴직 이후
- 결혼 및 출산, 이혼 등
- 사고·질병에 따른 장애 발생
- 사고·질병에 따른 사망
- 일시금
- 노령연금 신청
- 노령연금 수급

30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 가능(임의가입)
-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 대상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①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경우, ②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상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함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중위수 소득 : 1,013,000원, 연금보험료 96,230원)

31 아르바이트하는데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1개월 판단 기준 (종전) 7.10. 근로시작 시 7.10. ~ 8.9.까지 1개월 판단
(2025. 7월부터) 7.10. 근로시작 시 7.31. 기준으로 1개월 판단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또한, 복수의 사업장에서 합산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또는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연금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단시간 근로자 :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건설일용직 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건설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장(본사) 합산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의 현장별 합산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2025년 7월부터 시행)

32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 제도 시행(2027.1.1.) 이후 18세 도래(2009년생부터)하는 청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1개월분 보험료 전액 지원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도 시행(2027.1.1.) 이후 18세 도래(2009년생부터)하는 청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며,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드립니다.

지원 금액은 지원신청일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입니다.
* 2027. 1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1만 원, 연금보험료 4만 1천 원(연도별 지원 금액 변동될 수 있음)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 신청하시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2026.4월에 의결되어,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발 예정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 **(적용 대상)** 제도 시행일(2027.1.1.) 이후 18세 도래자(2009년생)부터 지원
- **(지원 대상)** 18~26세 사이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청년
- **(지원 내용)** 지원신청일 기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1개월분 지원

33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내역과 예상연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납부내역 및 예상연금액 조회 가능

(납부내역)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가입내역 조회」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에서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있나요?

34

●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노후(국민연금), 질병(건강보험), 실업(고용보험), 산업재해(산재보험)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향후 연금보험료가 소급하여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만 나이 기준 60세~65세)이 된 때 매월 연금(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성실히 납부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 국민연금: 비과세 금액 제외 후 기준소득월액의 9.5%
- 건강보험: 비과세 금액 제외 후 보수월액의 8.1348%(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 고용보험: 비과세 금액 제외 후 보수월액의 1.8%(근로자 0.9%, 나머지 사용자 부담)
- 산재보험: 전액 사용자 부담

4대 보험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 시 의무 가입해야 하며 기준소득월액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9%를 부담하고, 사용자의 부담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보험료율 (2026.1월 기준)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용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5%	4.75%	4.75%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보수월액의 8.1348%	4.0674%	4.0674%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9%	보수월액의 0.9% (고용안정사업 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 있음)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차이 있으며 사용자 전액 부담		

36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취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연금보험료는 본인 4.75%, 사용자가 4.75% 부담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이 연금보험료 전액(9.5%)을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던 중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며,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와 같은 9.5%지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4.75%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75%만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아울러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5%의 보험료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됩니다.

37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 입사일이 1일이면 입사한 달부터, 입사일이 1일이 아니라면 다음 달부터 납부
* 단, 본인이 원하면 입사일이 1일이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납부 가능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며, 입사일이 1일이거나 직원이 입사 월부터 납부를 원하면 해당 월부터 납부합니다.

직원이 입사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일에 입사하면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입사일이 1일이 아니라면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월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면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납부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아울러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2025년)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38

사업장가입자가 근무하던 중 월 중 퇴사해도 한 달 연금보험료를 내야하나요?

●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하고 나중에 받게 될 연금도 월 단위로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 부과에 따라 퇴사일이 속한 월까지 부과합니다. 따라서, 월 중 퇴사하였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5%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2025년)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를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75%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6년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연금보험료는 95,000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7,500원이 공제됩니다.

이때 근무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입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사망하면 3일 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에 입사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공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3일에 입사하면 사업장에서 3월부터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39

9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납부가 너무 부담됩니다.

-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매월 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음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월 87,4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월 87,400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입니다.

※ 단, 재산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

- (지원 수준) 근로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근로자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 각 월 최대 87,400원까지 지원)
- (지원 방법) ①사용자가 지원 신청 → ②법정기간 내 보험료 완납 → ③해당 월 보험료 지원금만큼 차감한 금액을 다음 달에 고지
- (지원 기간) 신청 월부터 36개월간

2025년에 47만 개 사업장의 근로자 74만 명에게 총 5,816억 원이 지원되었고, 2012.7월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12월까지 223만 개 사업장의 근로자 946만 명에게 총 8조 5,913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추후 납부)이 뭔가요?

40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추납)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최대 119개월)

*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추납이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추납(추후 납부)제도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연금수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미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①연금보험료 납부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 ②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③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납 가능 기간

- **(적용제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단, 국외이주 사유에 의한 적용제외 기간은 제외)
  *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기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된 기간(2015. 7. 29. 이후)
- **(납부예외 기간)**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 **1988.1.1. 이후 군 복무 기간**
  * 단, 타공적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군인연금)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 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추납을 신청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 이력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추납 고지서가 발송되고 그달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41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 반납은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반환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으로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을 복원시키므로 가입자에게 유리

반납제도는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로 수령한 반환일시금, 1999년 이전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하여 수령한 반환일시금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수준인 분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의 평균소득과 대비한 연금월액 수준을 말합니다.
2025년 연금개혁을 통해 기존(2025년) 41.5%에서 2026년부터 43%(1.5%p)로 일시에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1988년~1998년	1999년~2007년	2008년~2025년	2026년 이후
소득대체율	70%	60%	50%~41.5% (매년 0.5%p 감소)	43%

따라서,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반납하여 가입기간으로 복원하면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신청 대상 기간에 따라 2~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 연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나요?

-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임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입니다.

> * 1개월 판단 기준 (종전) 7.10. 근로시작 시 7.10. ~ 8.9.까지 1개월 판단
> (2025. 7월부터) 7.10. 근로시작 시 7.31. 기준으로 1개월 판단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공사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장(본사) 합산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의 현장별 합산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2025년 7월 시행)

일용근로자가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보험료의 80%(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 사업

구 분			기 준
소득기준			• 월 270만 원 미만
제외 기준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 연간 합이 4,300만 원 이상
지원 대상	신규 가입자	상용근로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일용근로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근로자에 한정, 분기별 소급 지원여부 판단
		지원수준	• 연금보험료의 80%(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상한			• 2018.1월 이후 최대 36개월

43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이 외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5%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75% 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라 함)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가입자 적용 제외 신청하였으면 임의가입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5%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2026년 7월 기준 41만 원)의 9.5%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현재 보험료율은 9.5%로, 2026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

44

연말정산(종합소득 신고) 할 때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연금 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연말정산 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음**

6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수급자가 연금 소득만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할 때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별 연금소득금액 예시

과세대상 연금액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 원)	연금소득금액
350만 원	전액	0원
450만 원	350만 원 + (450만 원 - 350만 원) × 40%	60만 원
516만 원	350만 원 + (516만 원 - 350만 원) × 40%	99만 6천 원
770만 원	490만 원 + (770만 원 - 700만 원) × 20%	266만 원
1,000만 원	490만 원 + (1,000만 원 - 700만 원) × 20%	450만 원
1,500만 원	630만 원 + (1,500만 원 - 1,400만 원) × 10%	860만 원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전자민원서비스에 수급자 본인이 로그인하시면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 계산」이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다음 연도 2월 20일 무렵)」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는 두 군데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함
- 두 곳의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 이상 또는 미만인지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6,590,000원, 2026.7.~2027.6.)에 달하지 못할 때는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일 때, 연금보험료 95,000원/본인 납부 금액 47,500원
>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일 때, 연금보험료 190,000원/본인 납부 금액 95,000원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6,590,000원, 2026.7.~2027.6.)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 예)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20만 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480만 원일 때,(2026.7월 기준),
>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320/(320+480)}×659만 원 = 2,636천 원으로 연금보험료는 250,420원 (본인 납부 금액 125,210원)
>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480/(320+480)}×659만 원 = 3,954천 원으로 연금보험료 375,630원 (본인 납부 금액 187,810원)

두 곳에서의 기준소득월액의 총합이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2026.7.~2027.6. 적용 상한액 659만 원, 하한액 41만 원)

46 가입내역안내서를 받았는데 뭔가요?

● 매년 가입자에게 가입 월수 및 납부 총액 등의 가입내역과 예상 연금액 등을 통지하는 안내문임

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자에게 매년 가입 월수 · 보험료 납부 총액 등 가입내용과 예상 연금액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제2항

이에 따라, **매년 네이버, 카카오, MMS 등 모바일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로 가입내역안내서를 발송하며, 네이버 · 카카오 미열람자, MMS 미도달자 등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가입내역안내서 주요 내용

- **(가입내역)** 가입 월수, 납부 총액[보험료(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 납부,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등을 포함], 미납총액(월수), 국고보조 지원 내역
- **(예상 연금액)*** 60세까지 현재 보험료로 계속 납부하면 받게 될 예상 연금액
  *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분은 지금부터 60세까지 중위수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으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
  * 60세가 되어도 10년(연금 수급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분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10년을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
  * 10년 이상의 임의계속가입자는 자료 작성 기준일(월)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
- **(기타 안내 사항)** 가입 대상, 국민연금의 필요성 및 장점, 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각종 납부제도, 지원 제도, 공적연금 연계 등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내역을 점자*와 외국어**로도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으로 등록된 가입자에게 매년 4월~5월 일반가입내역안내서와 점자가입내역안내서를 함께 발송

** 72개국 외국인에 대해 17개 언어로 제도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매년 10월~11월경 가입내역안내서와 함께 발송

47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체납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음
- 근로자가 보험료 개별 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체납된 보험료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 수 있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확인서'가 있는데, 기여금 원천공제 사실이 확인(회사 사용자 확인 필요)될 경우,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개별납부하지 않으셔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통지대상 체납월(최초 체납된 한 달, 체납사실통지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 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및 보험료(기여금+부담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납부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으로 납부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별 납부 관련 미납내역 확인은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납부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8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다음 달 15일까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동인증서(개인사업장은 사용자의 개인 공동인증서도 가능)가 있으시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49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장에서 신청(근로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음)
-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신청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월 87,4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월 87,400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입니다.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내방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4대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국민연금 EDI(www.edi.nps.or.k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지원하니,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지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0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 우리나라 국민과 마찬가지로 당연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가입 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상호주의 원칙 및 사회보장협정이나 조약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을 참고하십시오.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1)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제외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경제적 위험 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20개국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외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3)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외국인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타 국가의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51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생략
-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소득자료 없는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총액을 내방, 우편, 팩스, EDI, 인터넷, QR 웹팩스, 모바일 등으로 매년 5월 말까지 신고
- 전년도의 소득총액으로 조정되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는 매년 6월 중순경 사업장에 안내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신고하는 금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하면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면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결정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에서 발송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총액 신고 방법

- **서면 신고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 · 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 **EDI 신고 :** EDI 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 **인터넷 신고 :** 신고 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로도 신청 가능 (단,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
- **QR 웹팩스 신고 :**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
- **모바일 신고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소득총액 신고 이후 사업장에서는 공단에서 발송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52

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EDI 서비스에 대해 알려주세요.

- 방문, 우편, 팩스와 달리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국민연금 신고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전자민원서비스(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는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국민연금 신고업무 등이 가능한 전자민원서비스를 의미합니다.

EDI, 이런 점이 편리합니다.

- 별도 가입 없이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로 즉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고(입력) 내용을 시스템이 검증해 줘서 오류를 예방할 수 있고 처리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EDI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메뉴	해당 업무	처리기관
신고서 작성	4대 공통신고서(상실 신고, 내용변경, 탈퇴신고)	4대 보험 공통
	연금 고유신고서(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재개 신고 등)	국민연금
	건설일용직 신고서(기준소득월액 변경, 경정 신청)	국민연금
증명서 신청	증명서 발급신청(국민연금 각종 증명서)	국민연금
송·수신문서	신고서 처리 결과/ 증명서 처리 결과 / 연금 통지문서	국민연금

이런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 소규모 사업장에서 4대보험 업무를 직접 처리하시는 사용자
- 대 · 중규모 사업장에서 4대보험 업무를 전담하시는 담당자
- 국가기관, 지자체, 군부대 등에서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
- 국민연금 EDI 업무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세무 대리인 등 업무대행업체

이용 중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EDI 고객센터**(063-713-6565, 09:00~1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3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장 퇴사 신고는 회사에서 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 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 가능,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임의가입 가능

회사(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퇴사하면 사용자가 신고하므로 개인적으로 퇴사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면 사용자가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며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기한 내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퇴사자는 관할 지사에 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실 처리 후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며, 이 경우 본인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이 있으면 소득 신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팩스,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등으로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54 실업크레딧이 무슨 제도인가요?

○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입니다.
다만,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합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26년 1월)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 원 초과자
[소득]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초과자

(2026년 기준) 연금보험료의 25%(월 최대 16,640원)를 납부 시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월 최대 49,860원)를 지원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2016년 이후 총누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인원	3,238,678	665,997	584,351	563,362	564,191	570,348
지원금액	817,665	119,660	103,118	96,216	96,823	97,996

* 2016. 8월부터 제도 시행

55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반환일시금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 지급연령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경우 등 법에 정한 사유로만 지급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환일시금 지급은「국민연금법」제77조에서 정한 사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 지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하였을 때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으실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56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신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고(전화로도 가능)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57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소득이 적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서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 **(지원 대상)**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자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제외대상
  - 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 원 이상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 실업크레딧 또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 기간)**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 **(지원 금액)**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58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사업장은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함
-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신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 활동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75%) 부담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5%의 보험료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 및 연금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26년 7월 기준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1만 원에서 최고 659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됩니다.
- 신고 소득월액이 41만 원보다 적으면 41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659만 원보다 많을 때는 659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기준소득월액의 9.5%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59 소득이 줄어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으로 가능
- 사업장가입자는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면 조정 가능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 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 된 경우에는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할 때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득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60

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폐업(휴업)사실을 통보하면,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주소지로 납부예외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납부예외는 신청사항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고지 중단)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 연금을 위해 보험료 계속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61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면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월보험료 일부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음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지원하되, 2026년 현재 최대 월 50,350원이 지원됩니다.

월 보험료에 따른 농어업인 국고보조 지원액

월 보험료	100,700원 초과	100,700원 이하
지원액	월 50,350원 정액 지원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인	•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인의 범위에 대한 상세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실제 경작 면적의 합이 총 1,000㎡ 이상인지 확인, 농업 시설의 경우 총 330㎡ 이상인지 확인) 축산업 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62

국민연금 미납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분을 납부해야 연금 수령에 유리
-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음

국민연금 미납액이 있으면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고, 미납기간이 늘어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납보험료는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여 납부하거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대 2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고지서 납부 방법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신용 0.8%, 체크 0.5%)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 또는 고지서 발급을 희망하시거나 납부 방법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63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신고 가능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7년부터 공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가입자는 발급 불가)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해 부담한 사용자 부담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도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 필요)

연금보험료의 대상기간은 매년 1~12월이며,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는 당해연도에 원천공제된 연금보험료(고지월 기준)가 공제대상이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부과금액 전액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사용자 부담금이 없으므로,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지역가입자와 동일)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 부담금 및 연체금, 이메일 감액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4 국민연금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나요?

- 국민연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디지털ARS(1355),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비대면 발급 가능

지사를 방문하지 않으셔도 **국민연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디지털ARS(1355),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민연금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채널에 따라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톡)으로 로그인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시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및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국민연금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널별 발급증명서 종류

<table>
<tr><th></th><th colspan="2">홈페이지 ·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10종)</th><th>정부24(12종)</th><th>무인민원발급기(6종)</th></tr>
<tr><td>개인</td><td>•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 일시금지급내역*</td><td>• 개인회생 신청용 확인서
• 퇴직금 전환금 부과 내역서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td><td>•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 급증명(지급내역)*
• 개인회생 신청용 확인서
• 퇴직금 전환금 부과 내역서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td><td>•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td></tr>
<tr><td>사업장</td><td colspan="2">EDI(https://edi.nps.or.kr) (7종)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증명*
• 사용자부담금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 월별 납부확인서</td><td>•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증명
•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 사용자부담금 납부확인서
• 퇴직금 전환금 부과 내역서</td><td>디지털ARS(5종) - 개인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 급증명(지급내역)*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일시금지급내역*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td></tr>
</table>

* 영문 발급 가능

65

해외에 체류 중이면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 국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 소득원이 있으면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납부해야 함

소득이 있으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 귀국 예정이지 않더라도 해외이주 신고하지 않은 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해외에 있어도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으면 전화, 팩스,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등을 이용하여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로 해외에 체류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으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해외이주 신고 필수)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6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부가 각자 가입하면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음
- 단,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유리한 금액을 선택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두 분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 가입하여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 가입하여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89만 9,296쌍,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543만 원, 평균연금액은 월 116만 원, 월 합산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4,836쌍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급여를 조정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67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남편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는 당연가입대상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임의가입),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음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이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유사하지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에게는 별정우체국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8 출산크레딧이 무슨 제도인가요?

● 본인의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또는 입양한 둘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드립니다.

※ 자녀의 인정범위(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

최초 제도 도입 당시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을 한도로*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 2008. 1. 1.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얻은 경우 추가 가입기간

자녀 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추가 가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한편, 2025년 연금개혁으로 첫째 자녀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여 2026.1.1. 이후는 첫째·둘째 자녀는 각각 12개월씩,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최대 50개월 상한 규정도 폐지되었습니다.

* 2026.1.1. 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 2026. 1. 1.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 추가 가입기간

자녀 수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추가 가입기간	12개월	24개월	42개월	60개월	78개월

별도의 신청 없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에서 자녀 수 등을 확인하여 가입기간을 추가하며, 추가된 가입기간은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의 A값*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인정하여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6년 3,193,511원)

자녀수, 출산시기,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기 등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 및 상한 적용이 다르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고객센터 또는 지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9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부예외 가능
- 휴직 기간에 임금을 받는 경우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이면 납부예외 인정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면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니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만 휴가 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다만, 휴직 기간에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만 납부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70 군복무크레딧이 무슨 제도인가요?

-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 연금을 받을 기회를 늘리고 연금액을 높일 수 있음

2008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군 복무*를 하였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때 추가로 6개월을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드립니다.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추가된 가입기간은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의 A값*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인정하여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6년 3,193,511원)

한편,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1.1. 이후* 6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경우, 실제 군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최대 인정기간은 12개월로 제한됩니다.

* 2026.1.1. 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71

이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 원을 받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지급개시연령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하면서 당사자 간 분할 비율을 4:6(노령:분할)로 별도 합의하였다면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60%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건부터 법률혼 기간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실종선고기간· 거주불명등록기간·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을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단,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에 의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며, 이때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적용합니다.

연금 지급개시 나이 상향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 가능 나이도 이에 맞추어 상향

출생연도	~1952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분할연금 지급가능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72

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 정도가 고정된 때의 장애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
- 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았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초진일*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장애심사규정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2016.11.30. 이후 초진일이 있는 경우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사이에 있고, 다음의 ①~③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단,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다음의 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16.11.30. 전 초진일이 있는 경우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초진일이 있어야 함	미납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1/3 미만

※ 장애등급별 장애연금액
- 가. 장애등급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나. 장애등급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다. 장애등급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라. 장애등급 4급 :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장애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3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1~4급) 심사

장애연금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점 전에 완치일이 있으면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할 때는 1년 6개월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판정을 합니다.

그러나 장애심사 결과, 장애 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 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추후에 다시 등급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장애등급 결정 및 장애 심사의 적정성을 위하여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 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 장애가 악화하여 장애등급이 상향되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며,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이 내려가거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74 만성신부전증(진행만성콩팥병)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투석 3개월 경과 후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음

진행만성콩팥병의 경우 지속적으로 투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장애결정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입니다.

초진일 또는 완치일에 대해서 장애심사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진행만성콩팥병은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과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만성콩팥병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다면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만성콩팥병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으나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등급별 지급률

장애등급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장애 4급
지급률	기본연금액의 100%	기본연금액의 80%	기본연금액의 60%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

75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완치 후 또는 1년 6개월 경과 후 청구 가능
- 보험사와 합의 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이 정지됨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이 교통사고로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어도 제3자의 가해로 장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이 정지(최대 60개월)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제3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 내역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하면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 서류가 필요함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6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외국도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 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77

장애·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장애·유족연금 수급 중이라도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 납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다가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받는 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선택하지 않은 급여 일부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때에는 제외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유족연금 수급 중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선발급여	후발급여		지급할 급여
장애연금	노령(분할)연금		선택한 하나의 급여
	반환 일시금	본인기여	선택 한 하나의 급여
		타인기여	「장애연금+사망일시금 상당액」과 반환일시금 중 선택
유족연금	노령(분할)연금		「노령(분할)연금+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중 선택
	반환일시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상당액」과 반환일시금 중 선택

78

사망하게 되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사망하게 되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아래의 유족이 있으시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부모(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조부모(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부모·조부모의 연령은 2026년 기준이며,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 적용

다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며, 연령·장애 요건과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79

배우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 가능
-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지급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생존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요건 >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③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④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③, ④의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액은 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80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제3자의 행위로 사망하여 손해배상금 수령 시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따라서 제3자의 가해로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이 정지(최대 60개월)되고 제3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 내역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하면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사유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비서류>
기본적인 유족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 서류가 필요함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1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얼마 전 재혼하셨는데 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때에 「국민연금법」 제73조의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변경 취득할 수 있음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재혼·사망으로 소멸된 때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단,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았을 것)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 제73조의 유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만 지급되나,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망 당시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 수급권을 변경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된 때에 자녀에게 수급권 소멸 사유가 없고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해당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82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 금액(2026년 기준 3,193,511원)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을 정지
- 사망 후 최초 3년간,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

최초 3년간 유족연금 지급 후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3,193,511원(2026년 기준)을 초과하면 55세(~60세)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족연금은 일정 납부요건을 충족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은 소득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60세)가 될 때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6년도는 월평균 3,193,511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 상향조정

(단, 사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출생연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해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다만, 수급권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83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나요?

-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지급연령도달 사유는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지급연령도달 사유는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에 도달하면 10년 이내 (사망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에서 폐지된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1999.1.1. 폐지), 타공적연금 가입 사유(2007.7.23. 폐지)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도 소멸시효 재기산 적용대상입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4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민을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해외이주 신고한 경우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해외이주 신고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외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 본인 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도장(서명 가능)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출국 전 청구 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 예정)

85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③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2026.6.15.기준)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4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6개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	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 (8개국)	최소 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7개국)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 2019.12.24.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아님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필리핀, 아르헨티나	벨리즈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 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라오스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튀니지, 우간다, 캄보디아, 솔로몬군도

*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 필리핀은 상응성 인정 대상국에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으로 변경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86

-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
-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수령 가능한 최소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음

60세(~65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았으면 반납할 수 없습니다.

(1953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 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받지 못할 때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아 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별 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지급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87 국민연금 청구 절차가 따로 있나요?

●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ARS를 통해 청구하여야 함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63세(출생 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되었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디지털 ARS(1355 고객센터)를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셔서 청구하시면 되고, 본인이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노령연금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디지털 ARS(1355 고객센터)에서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PC) →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국민연금 신청 또는 국민연금 신청(쉬운신고)
- (인터넷) 정부24(PC) → 민원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노후생활 → 연금 조회 및 알림 예약 서비스 → 국민연금(노령연금 청구) 신청
-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 → 신고·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
- (디지털 ARS) 1355 고객센터 → 신고·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

※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서류>

-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내려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본인 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2008년 전 이혼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이 가능한 제적등본을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서명 가능)

88 국민연금을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3,193,511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원 수급연령 보다 최대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하여 받음

조기노령연금은 2026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3세 전이라도 연금을 일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6년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2026년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3,193,511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액을 적용한 금액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평생 일정 수준 (1개월 0.5%, 1년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액

총급여액	2014년 이후 근로소득공제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 원 초과 1천 500만 원 이하	350만 원+(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 원 초과 4천 500만 원 이하	750만 원+(1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천 200만 원+(4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 원 초과	1천 475만 원+(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 2019.1.1. 이후 귀속분: 1일 15만 원 (2019.1.1.전 귀속분: 1일 10만 원)

○ 출생 연도별 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 연도	~1952년	1953~1956년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노령연금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89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됨
-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연 7.2%, 월 0.6%)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의 연기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 후 65세(~70세)가 되면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받게 됩니다.

※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 대상임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 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로 상향)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되 연기 1개월마다 0.6% 더하여 지급하므로, 1년 연기 시 7.2%, 5년 연기 시 36%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습니다.
※ 연기 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증가할 경우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 대상 및 지급 가산율

구 분	2012년 6월 이전	2012년 7월 이후
신청 대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 (조기노령연금 포함)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 (조기노령연금 포함)
지급 가산율	연 6%(월 0.5%)	연 7.2%(월 0.6%)

90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급하는 것과 연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것과 연기신청에 따른 유불리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짐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최대 5년 일찍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찍 청구하는 1년에 6%(월 0.5%)가 감액되어 최대 5년 일찍 수급하면 3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정년퇴직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분에게는 조기노령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실 때는 본인의 경제상황, 건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기연금 신청은 출생연도별 급여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간 가능하고, 연금을 전액 재지급 받을 때 연기된 기간 1년에 7.2%(월 0.6%)의 가산금을 더해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5년 연기시 최대 36%).
특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연기를 선택하여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기기간 동안 연기한 연금은 지급되지 않고 지급연기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가산은 유족연금액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값이란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하며, 2026년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 2025.12월 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액이 A값 초과 시 감액에서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 감액으로 변경(2025.1.1. 소득부터 적용, 2026.6.17. 시행)

※ 연기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증가할 경우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일찍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경제상황과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91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 월 250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음
-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됨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으로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 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 신청' 또는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 절차를 통해 월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압류 금지 금액인 250만 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 시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 수급 전용 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안심(安心)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 계좌로,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 금액(2026년 2월 현재 250만 원) 이내로 입금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 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 계좌를 신청하셔야 하며, 일시금 급여는 수령액이 월 250만 원 이하면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 발급 기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iM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92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국민연금도 오르나요?

⊙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조정됨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에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연금액 인상비율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1.0%	1.9%	1.5%	0.4%	0.5%	2.5%	5.1%	3.6%	2.3%	2.1%

⊙ 실제 연금액 인상 사례

(단위 표시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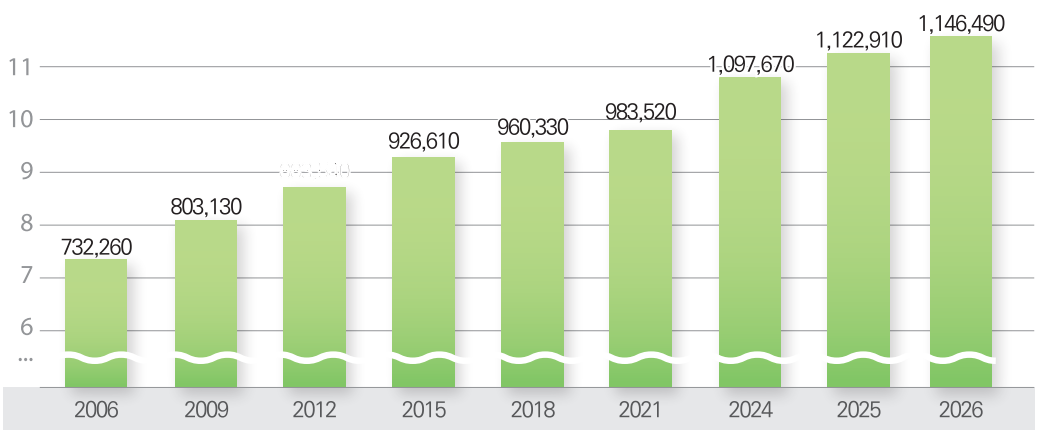

※ 최근 20년간 연금 월액이 414,230원 인상됨(최초 연금 수령 이후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한 사례)

93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연금 추가 지급
- 2026년 1월 기준 배우자 연 306,630원(월 25,55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월 17,030원) 지급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합니다.

○ 부양가족연금 대상 요건

배우자	별도 요건 없음
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23.9.14. 이후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에 따라 조정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때에만 인정합니다.

*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였던 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자녀, 계자녀, 부모, 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수급권자의 형제자매, 손자녀, 증손자녀, 조부모, 증조부모 등)를 말함

다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인 부모의 연령 : 급여지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됨

94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3,511원(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 +5세'가 될 때까지 노령연금 감액,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노령연금을 받는 분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지급 연령부터 5년 동안은 받는 노령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5년 이후에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일정 금액'을 'A' 값이라고 하며, 연금 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2026년 A값: 3,193,511원)

* 2025.12월 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액이 A값 초과 시 감액에서 「A값+200만 원」이상인 경우 감액으로 변경(2025.1.1. 소득부터 적용, 2026.6.17. 시행)

예를 들어 2026년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2026년도에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 5,193,511원 이상인 경우 감액된 연금액을 받습니다.

단, 감액되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최대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 구간별 감액표

현 행				개정 (2026.6.17.시행)
구간	초과소득월액	감액 산식	월감액금액	좌동
1	1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 원 미만	< 삭제 >
2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 원) × 10%	5만 원 이상~ 15만 원 미만	< 삭제 >
3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 원) × 15%	15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 좌동 >
4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3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 원) × 20%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5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 원) × 25%	50만 원 이상	

95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나요?

- 2012년 5월부터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 대부 실시
-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대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부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 금액은 개인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최고 1,000만 원 한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진료비로 7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면 본인 연금액의 2배인 720만 원*을 한도로 실제 사용한 금액 700만 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 한도(720만 원)= 30만 원 × 12개월 × 2배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매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대　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일부 제외)**
- 대부 금액 :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소요 비용 (최고 1,000만 원 한도)
- 대부용도 :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 신청 기한
  - 전월세 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부이자 : 2026년 3분기 연 2.92% (분기별 변동금리)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낮은 금리로 분기별 변동됩니다.
- 대부 상환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미 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 전 신청제외대상, 신청 자격, 용도별 신청 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6

국민연금,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재산 수준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음

● 기초연금

구분	내 용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소득 · 재산 수준 소득인정액[1]이 선정기준액[2] 이하 1)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2)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 원(2026년 기준)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액	• 월 최대 349,700원(기준연금액) ※ 소득 ·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부부 모두 받으시는 분 또는 국민연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도 있음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수급자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 결정: MAX(국민연금 급여액 등 적용산식①, A급여액 적용산식②)

① 국민연금 급여액 등 적용 산식: 기준연금액 250%(874,250원) - 국민연금급여액 등

② A급여액* 적용산식: (기준연금액(349,700원)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국민연금 급여에서 본인 기여분이 아닌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만들어지는 금액으로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짐

● 국민연금급여액 및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예시

국민연금급여액 기준		국민연금 A급여액 기준		기초연금 급여수준
기준연금액의 150% (524,550원) 이하		기준연금액의 75% (262,270원) 이하		349,70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524,550원) 초과	›	기준연금액의75% (262,270원) 초과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미만	›	174,850원 ~349,700원 사이
국민연금급여액 기준		**국민연금 A급여액 기준**		**기초연금 급여수준**
기준연금액의 200% (699,400원) 초과		기준연금액의 150% (524,550원) 초과		174,850원 (부가연금액)

기초연금 신청 방법, 수급대상 여부, 기초연금액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유료)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7

연금을 받는 계좌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유료) 등에서 본인 확인 후 계좌 변경 가능

본인이 전화(지사 또는 고객센터), 지사 방문, 국민연금 홈페이지, 디지털 ARS,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좌 변경은 매월 급여지급일의 6일 전까지 신청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기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신고·신청 →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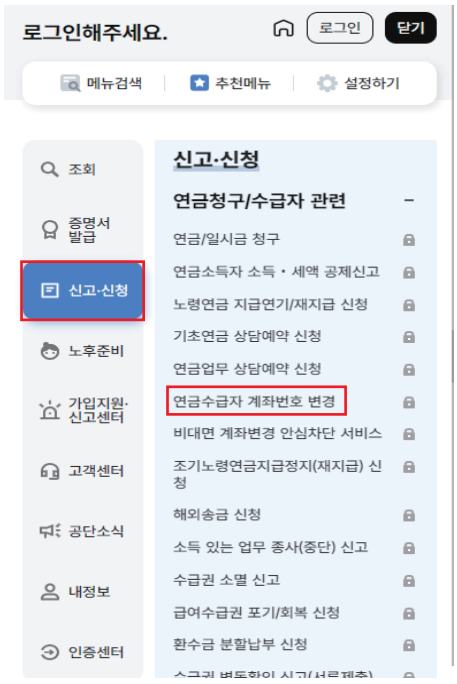

※ 로그인 필요(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98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국민연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연 350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함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시)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이면 연금소득공제 504만 원을 차감한 266만 원(연금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별 연금소득금액 예시

과세대상 연금액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 원)	연금소득금액
350만 원	전액	0원
450만 원	350만 원 + (450만 원 - 350만 원) × 40%	60만 원
516만 원	350만 원 + (516만 원 - 350만 원) × 40%	99만 6천 원
770만 원	490만 원 + (770만 원 - 700만 원) × 20%	266만 원
1,000만 원	490만 원 + (1,000만 원 - 700만 원) × 20%	450만 원
1,500만 원	630만 원 + (1,500만 원 - 1,400만 원) × 10%	860만 원

※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과세대상 연금액 구간별 신고 방법

과세대상 연금액	신고 방법
연 350만 원 이하	• 전액 연금소득 공제되므로 종합소득 신고할 연금소득금액 없음
연 350만 원~ 770만 원	• 노령연금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소득금액을 합산하여 5월 중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연금소득금액이 미미하여 연금소득으로 인한 세액적 영향도는 높지 않음
연 770만 원 초과	• 노령연금에서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노령연금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 2 이상의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합산한 과세대상 연금액 기준

※ 사적연금(개인연금저축 등)은 연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에 해당되어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제외 가능(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 2024.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종전기준 연간 1,200만 원 이하)

99 연금 수급 중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어떤 경우에 신고하나요?

- 연금수급자나 부양가족대상자가 사망, 혼인, 이혼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 신고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아래와 같은 변동이 생기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으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는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지급정지)되거나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연체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	부양가족 대상자
• 사망 • 재혼, 입·파양(유족연금)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유족 연금) • 장애 상태 변동(장애·유족 연금) •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유족 연금)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 계좌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 사망 • 혼인, 이혼, 출생, 입·파양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 여부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 2023.9.14. 이후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100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분할)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됨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연금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12월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예시*

(단위 : 원)

과세대상 연금 월액 (비과세소득은 제외)		공제대상 가족의 수(본인·배우자를 각각 1인으로 봄)				
천 원 이상	천 원 미만	1	2	3	4	…
660	665	0	0	0	0	…
665	670	1,200	0	0	0	…
815	820	8,400	0	0	0	…
820	825	8,640	1,140	0	0	…
1,000	1,010	17,400	9,900	2,400	0	…
1,200	1,210	27,230	19,730	12,230	4,730	…
1,500	1,510	43,430	35,930	28,430	20,930	…
1,800	1,810	59,630	52,130	44,630	37,130	…
2,000	2,020	80,510	63,200	55,700	48,200	

* 과세대상 연금 월액에 따라 매월 공제하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101

해외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해외로 이주하시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되며 해외송금도 가능함

공단은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해외 체류 사실 및 수급권 변동 사유(사망, 결혼, 이혼, 출생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해외이주 시 현지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도 공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해외수급자 수급권 확인 절차 >

수급권 확인서 발송(연 1회) → 수급권 확인서 접수·변경 처리 → 자료미제출자 의무 이행 촉구 → 일시 중지 (정지)

- (수급권 확인서 발송) 해당 분기에 생일이 있는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수급권 확인서 발송
- (확인서 등 제출 기한) (1차) 해당 분기 첫째 달 말일, (2차) 해당 분기 둘째 달 말일
  ※ 예시) 2분기(4월·5월·6월생) → (1차 기한) 4월 30일까지, (2차 기한) 5월 31일까지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모바일 팩스, 비대면 수급권 확인 서비스 모바일 앱

주 소 (Address)	• (국내/In Korea) (우) 0603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3층 국제연금지원센터(논현동,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 • (해외/Overseas) (06039) 3rd Floor, NPS Bldg, Dosandae-ro 128 Gangnam-gu, Seoul, Korea
팩스 번호 (FAX No.)	• (국내/In Korea) 02-3485-2931 • (해외/Overseas) 82-2-3485-2931
비대면 수급권 확인 모바일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서비스" 검색 후, 앱*을 설치하여 확인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 앱(App) 이용시 국민연금 NPS번호, 생년월일, 본인 여권 필요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일시 중지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가 해외이주 시 매년 수급권 확인을 통해 연금 계속 지급

2026
국민연금
100문 100답

펴 낸 곳 : 국민연금공단 소통홍보실
발행년월 : 2026년 7월
주　　소 : [5487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홈페이지 : www.nps.or.kr
고유번호 : 0A73-202607-PM-0886

NPS 국민연금공단
National Pension Service

www.nps.or.kr
www.npsonair.kr
blog.naver.com/pro_nps
instagram.com/npstagram
facebook.com/proNPS
www.youtube.com/@NPS_kr